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향나기, 여는 디자인,
더불어 누리는 행복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294호 2022. 2. 7.(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5호(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9호(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향나무어린이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2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1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회 람							
--------	--	--	--	--	--	--	--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3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2호(2020.5.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08호(2021.6.28.)호로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사모지근린공원) 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영업권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56-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2. 7.~ 2. 22.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공원녹지과 / ☎032-749-8722)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 ☎032-569-7566~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8지 등 4필지
 - 토지소유자 : 권○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외 5인
8.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38번지 사무실 등 총 131건
9. 기 타
 -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향나무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향나무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원개요

공 원 명	시설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향나무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09-8번지 일원	2,080.8	건설부고시 제1989-689호 (1989.11.17.)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22. 02. 04.(금) ~ 02. 18.(금), 15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3)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과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므로 회의규칙에서 중복 되는 조항을 삭제(안 제49조)
-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가지번호를 활용한 신설조문 등을 정비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 한자어 등을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9조(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기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기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1조(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10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기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 폐

제1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제1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나 정회 또는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의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유회가 선포되면 그 날은 개의를 할 수 없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9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시 개의할 수 있다.

제2절 의 사 일 정

제2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각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의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1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2조(의사일정의 미처리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6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7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한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대안을 포함한다)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9조(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수정동의)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며,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찬성하여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변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안동의를 있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1.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변안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제안 또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이 요구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소속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의안의 정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36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

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연수구를 방문한 외빈 및 외국 명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 할 수 있다.

제37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정에 대해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단상에 답변자의 발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의원에게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질의·반론·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2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④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

제43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5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제5절 표 결

제4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할 때 표시한 의견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수 있다.

제49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 3명 이하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위원회 수정안을 포함한다)을 표결한다.

제52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6절 회 의 록

제53조(회의록의 작성) 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과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④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 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는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장 위 원 회

제5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8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5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0조(위원회의 의안 제출)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3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4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위원회의 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6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9조(전문위원의 발언)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1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2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3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보고자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75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회,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위원 아닌 출석위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전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속기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76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7조(준용규정)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회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8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와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0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

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83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와 질문형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72시간 전(토요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자의 선택으로 한다.

④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 할 수 있다.

⑥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한다.

⑦ 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폐회나 휴회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서면 질의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6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7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 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 서

제9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단, 물은 제외한다)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회의중 의장 또는 위원장에 통보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하여 의회 청사를 떠나는 행위
7.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4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95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등을 낭독하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9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 및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92조에서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100조(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장 징계

제10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다.

③ 위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0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번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4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05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에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지원신설(안제5조제8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8. (생략)</p>	<p>제5조(예산의 지원)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관계법령 발췌사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예산의 지원) 제8호 신설

-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권고적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비용추계를 첨부하기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태 숙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통장 나이를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
(안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만25세”를 “만 18세”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제공하여서”를 “제공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생략)</p> <p>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u>만25세</u> 이상인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만 18세</u> ----- ----- ----- ----- ----- ----- -----</p>
<p>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p> <p>1. ~ 6. (생략)</p> <p>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u>한함</u>)</p> <p>8. (생략)</p> <p>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u>기타</u> 동 행정예 필요한 사항</p> <p>10. (생략)</p>	<p>제7조(임무)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한정함</u>----- -----</p> <p>8. (현행과 같음)</p> <p>9. ----- <u>그 밖의</u> -----</p> <p>10. (현행과 같음)</p>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생략)

②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협의

제12조(비밀유지) ① (생략)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체 없-----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

제12조(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를 위하여 -----

----- 제공 -----
해서-----.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구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이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 을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를 “법 제3조” 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u>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u>」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3조(지원 등) ① ----- ----- ----- <u>법 제3조</u>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새마을운동조직 회의참석수당

나. 추계 결과

- 세출 : 129,600천원
 - (일반회원) 330명 × 30,000원 × 12회 = 118,800,000원
 - (협 의 회) 30명 × 30,000원 × 12회 = 10,8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최대성

※ 작 성 요 령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648,000	
회의참석수당	1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648,000	
재원 조달							
의존원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129,600	129,600	129,600	129,600	648,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